

中國의 財政 및 金融體制의 改革⁽¹⁾

李 根

현대 중국의 세입·세출체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적 특성의 지속하에, 그 취약성이 주로 기업과 조세당국간의 자의적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이윤세 납부제도와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재정수입의 자의적 분배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개혁 이후, 재정정책은 경기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 하되, 직접적 행정조정이 아닌 간접적인 조세정책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1979~1990년간의 중국의 금융개혁은 금융시장의 훈련에 일조하였고, 기업의 운영자금조달에 새로운 통로를 제공하였고, 특수 은행에 의존하던 금융방식에서 탈피하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개혁은, 은행위주의 금융구조의 개편, 금융기관간의 경쟁 강화, 신용활동에 있어서의 은행의 독자성 강화의 측면에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1. 序 論

1978년 이래 계속된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는, 다방면에 걸친 제도적 변혁 즉 이전의 중앙계획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여기에서 조세, 예산지출, 화폐금융 등을 망라하는 재정금융제도의 개혁은 이같은 변화의 핵심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재정 및 금융체제의 발전과 최근의 개혁과정을 검토하면서,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래 개혁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절은 정부와 기업간의 재정금융관계를 중심으로 정부수입의 변화 과정에 대해 서술한다. 그리고 3절에서는 정부지출면에서의 변화를 개괄한다. 특히 개혁 이후 국가부문에서의 투자지원 조달 및 그 배분에서 나타난 변화상을 상세하게 고찰할 것이다. 4절에서는 중국의 화폐금융제도와 그것의 개혁을 다룬다. 우선 전통적인 중앙계획체제에서 화폐와 은행이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고,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중국의 재정금융개혁의 과정에서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장래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2. 財政部門의 變化

2. 1. 租稅構造

개혁 이전 중국정부의 주 수입원은 통합工商稅, 국영기업의 利潤上納, 농업세 그리고 관

(1) 서울대 대학원의 강용중군이 본 논문의 초고를 정리하고 교정보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세였다. 工商稅는 상품세 (commodity tax), 상품유통세 (commodity circulation tax), 사업세 (business tax), 인지세 (stamp tax) 등으로 분리되어 있던 세목을 1958년에 통합한 것으로 일종의 판매세 (turn-over tax)이다 [Nee, etc. (1982)]. 공산물, 농산물의 구매, 수입, 소매, 교통과 운송, 기타 서비스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경제주체들은 工商稅 부담의 의무를 지고 있다. 이 세금은 판매나 소유이전시에 부과된다. 그리고 세율은 판매가격의 2.5%에서 69% 까지 다양했다. 소비재, 특히 필수품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는 30~69%의 높은 세율로 工商稅가 부과되지만, 중공업 제품에 대해서는 5~15%의 낮은 세율로 부과되었다.

대다수의 사회주의경제에서 그러하듯이 중국에서도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법인소득세로서는 1950년에 제정되어 국영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고 있는 工商所得稅가 있었다. 즉 사적 기업이나 집체기업과 같은 비국영기업들이 이 세금의 주요 표적이었다. 이 때문에 工商所得稅는 중국의 사적 부문을 통제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었는데, 실제로 1950년에서 1956년 사이에 사적 부문에 일종의 제약을 가하기 위해 강압적 성격의 과세와 심지어 물수에 벼금하는 과세가 동원되기도 하였다 [Bachman(1987)]. 하지만 1957년 제 1차 5개년계획이 종료되고 사회주의경제로의 이행이 완료되자, 비국영기업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工商所得稅의 중요성도 사라지게 되었다.

국영기업의 경우, 그들의 중요한 임무는 이윤을 실질적 소유자인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었으므로 별도의 소득세를 부담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국영기업의 ‘利潤納付’ (profit remission)는 법인세 납세라는 의미와 주주에 대한 이윤배당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개혁 이전의 중국에서는 유럽의 사회주의경제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윤의 일부를 기업내에 유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체계는 매우 강한 중앙집중적 경제의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즉 모든 이윤이 일단 국가예산으로 귀속되었다가, 고정자본 투자와 유동자본으로 사용될 자금으로 다시 각 기업에게 재배분되었다.

요약하면 개혁 이전의 중국은 거대한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단순한 조세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이는 ‘통합工商稅’의 성격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그 결과 조세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과 인센티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단지 정부수입의 원천으로서의 의의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일종의 판매세라 할 수 있는 통합工商稅는 분류상 간접세에 해당하지만, 생산자측에서 보면 사실상 직접세와 다르지 않았다. 일단 중앙계획에 의해 고정가격 (fixed price)이 변경불가능한 환경으로서 주어지면, 통합工商稅는 이 때 발생하는 부문간 이윤을 균등화하도록 작용하였다. 그것은 계획가격 (plan price)의 웨곡에 의해 발생하는 불

균등한 이윤 마진이 생산자에 대한 인위적인 신호를 창출하고, 이것이 정부당국이 의도했던 가격신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World Bank(1990a, p. 3)].

2. 2. 國家와 企業間의 金融關係

개혁이 실시되기 이전, 사회주의 계획경제인 중국에서 국가·기업·노동자의 3자간에 존재했던 금융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모든 소득은 정부에 귀속되고, 모든 지출도 정부에 의해 행해진다”라거나, 결코 깨지지 않으면서 모든 이들이 조금씩 가질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철제 솔에서 식사”하는 행위 등의 비유가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독립된 경제주체일 수가 없었다.

개혁 이전의 시기는 전반의 18년(1949~1966년)과 후반의 11년(1967~1977년)으로 양분할 수 있다. 전반 18년 동안에는 기업들이 이윤뿐만 아니라 감가상각기금까지 국가예산에 전부 납부하였다. 따라서 운영자금과 자본투자 자금도 국가예산에 의해 충당되었다. 후반 11년 동안에는 고정자산의 소비분에 대한 지출금을 충당하기 위해, ‘更新改造基金’(Replacement and Reconstruct Fund)이라는 명목의 감가상각기금이 기업 내에 유보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소규모 투자분에 대해서도, 정부로부터 자금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更新改造基金 중에서 기업 스스로 지출하게끔 되었다. 하지만 이 기금은 매우 부족하였는데, 인플레이션도 고려하지 않았고 그 용도도 폐기처분되는 자신의 교체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1966년 이전까지의 시기에는 기업내에 유보되는 자금은 사실 거의 없었다. 기업내에 유보되거나 기업에 할당되는 자금의 양은 기업의 단순재생산을 위해서도 턱없이 부족하였으며, 감가상각기금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적었다. 따라서 기업들은 현재 규모의 생산을 유지하는 데도 추가적인 정부충당금이나 추가적인 정부투자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다. 다만 ‘大躍進運動’ 기간 동안에는 기업내 유보금이 감가상각기금보다 약간 상회하였다. 1966년 이후에도 기업내 유보금은 감가상각기금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기업이 생산규모를 확장하려는 경우 여전히 정부충당금에 강하게 의존해야 했다.

요약하면 개혁 이전의 29년 동안, 정부와 국영기업 간 금융관계의 근본적인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시기에 따라 약간의 개선이 있기도 했지만 곧바로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였고, 따라서 어떠한 돌파구도 마련되지 못했다.

1978년 경제개혁의 시작과 더불어 국가와 기업 간 금융관계를 바꿔 보려는 몇 가지 시험적 성격의 시도들이 있었다. 여기에는 ‘企業基金制’(Enterprise Fund System), ‘利潤留保制’(Profit Retention System), ‘利潤契約制’(Profit Contract System), ‘利潤稅制度’(Tax for

Profit System)의 제1, 2 단계 등이 속한다.

기업기금제(EFS)는 1978년 기업들에게 약간의 인센티브와 자기개발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여섯 가지의 목표치(생산가치, 생산량, 신제품, 이윤, 비용, 재고의 회전, 품질, 작업장 안전도)를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5%에 해당하는 기업기금을 순이윤 중에서 유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덧붙여 목표치를 초과하는 순이윤의 10% 정도도 기업내에 유보할 수 있었고, 감가상각기금은 아예 정부에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1979년에는 이윤유보제(PRS)가 상업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과 공업 및 운송업에 종사하는 몇몇 기업에서 실행되었다. 유보된 이윤은 총 급여액의 11%에 해당하는 보너스기금과 순이윤의 10%에 해당하는 세 가지 기금 즉 科學研究基金, 勞動者熟練基金, 新製品開發基金을 위해 사용되었다. 1980년에는 각 기업에 대해 기초 이윤쿼터(basic quota profit)와 이를 충족하는 경우 기업내 유보금의 규모를 결정해 주는 표준적 비율이 정해졌고, 기초 쿼터를 상회하는 초과이윤에 대해서는 더 높은 유보율이 주어졌다. 이러한 방식의 이윤유보제는 이듬해인 1981년에 시행된 이윤제약제와 매우 유사하다.

다소 새로운 제도인 이윤제약제(PCS)는 수도철강회사를 포함한 몇몇 大中形企業에서 실시되었다. 기초 이윤쿼터는 주로 전년도에 실현된 이윤에 근거하되 해당 연도에 새롭게 나타난 요인들도 참작하여 결정되었다. 일단 목표치를 달성하면, 기업은 生產高와 피고용자 급여액의 일정한 비율을 기업내에 유보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기초 목표치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되었다.

이윤세제도(TPS)란, 상급 정부기관에 이윤의 형태로 귀속되던 자금을 법인소득세의 형태로 세무기관에 납부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 제도의 도입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쳤다. 첫번째 단계의 이윤세제도가 시험적 성격을 띠고 실시된 것은 1980년이었다. 약 400개 기업체에 대한 3년에 걸친 시험단계를 거치면서 이 제도가 대체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후 1983년에 107,145개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실시되었다. 이들 국영기업은 공업, 상업,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로서, 이윤을 얻고 있던 전체 기업의 92.7%에 해당하였다. 이 제도 하에서 소규모 국영기업은 7%에서 55%에 이르는 법인 소득세를 납부했다. 세후 이윤은 생산 확장이나 종업원 복지를 위한 용도로 지출할 수 있었다. 大中形기업은 55%에 해당하는 법인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세후 이윤에 대해서도 상호 협상에 의거하여 일정한 양 혹은 비율만큼을 추가로 징수하였다.

한편 이윤세제도의 실시로 인해 기업의 투자재원 조달창구는 정부예산에서 은행대출로 전환되었다. 은행대출은 매우 낮은 이자율하에서 이뤄졌으며,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필요

한 차금도 세전 이윤으로부터 지불되었다. 이 제도로 말미암아 정부는 차입 원금의 많은 부분을 실질적으로 상환하는 주체가 되었다. ‘세전 이윤에 의한 대출금 상환’ 제도는 이후의 ‘계약경영제’ 하에서도 계속 실시되었다.

1983년 이윤세제도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과세대상 이윤 중에서 유보되는 둘의 비율은 이전의 15.7%에서 17.9%로 증가하였다[Gong and Chen (1984)]. 그러나 정부의 조세관련 기관은 이 제도에 만족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세후 이윤의 분배 방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취자와 납부자간의 협상을 통해 가변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조세기관은 세금이 갖는 경제적 조정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조세를 도입하고자 했으며, 기업의 세후 이윤을 분배하는데 어떤 고정된 비율을 적용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1984년 제 2 단계 이윤세제도가 도입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2단계 이윤세제도는 1984년 5월에 공고되고 그해 4/4분기에 전격 실시되었다. 2단계 이윤세제도하에서 大中形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율은 55%로 불변이었지만 새로운 종류의 세금들이 도입되었다. 조정세(adjustment tax), 제품세(product tax), 부가가치세, 사업세, 염세(鹽稅), 그리고 토지세(land tax), 영업허가세(plate license tax) 등을 포함하는 몇몇 지방세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조정세란 법인소득세 납부 후의 이윤 중에서 다시 국가에 귀속되는 이윤 부분을 지칭한다. 조정세의 실제 규모는 기업과 그것의 감독을 담당하는 행정 기관 그리고 정부의 금융·세제 담당기관 사이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지 1년이 지난 1985년 4/4분기 초반 이후 20개월 동안, 중국의 국가예산 상에 등록되어 있는 제조업체에 의해 실현된 이윤은 계속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정부에 귀속된 이윤의 규모도 17.8%나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더구나 기업들은 새로운 세제하에서 세금부담이 과중하다는 불만을 터뜨렸으며, 이윤세제도의 중앙집중적 성격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조세수입도 크게 줄어들었다[Lee(1990)]. 1987년 6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중앙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계약경영제’(중국어로는 ‘承包制’)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과거의 계약이윤제를 대체하기로 결정했다[Yang(1990)].

계약경영제는 세 가지 점에서 이윤유보제의 기본 생각들을 원용하였다. 첫째, 기업의 국가에 대한 이윤납부액을 이윤세제도처럼 세율로써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절대액으로써 고정시켰다. 둘째, 원칙적으로 기업생산의 확장은 유보된 이윤을 재원으로 사용하여 개별기업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였다. 셋째, 노동자의 수입을 해당기업의 경영성과와 밀접하게 연계 시켰다.

계약경영제에서는 각 이윤납부 계약이 3년 혹은 5년 단위로 체결된다. 개별기업은 실제

실현된 이윤의 양에 관계없이 정해진 송금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기업이 충분한 이윤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업은 부족분을 운용자금으로부터 총당해야 하며 이후의 초과이윤으로 적자분을 메꾸어야 한다. 이같은 계약경영체는 1989년 초반에 전체 국영기업의 80%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실시되었다.

중국의 국가재정이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빠져있고 정부의 재정수입은 총생산량만큼 빨리 증가하지 않자, 財政部는 계속되는 재정적자의 원인을 계약경영체 탓으로 들렸다. Xun(1990)의 연구에서 보듯이, 1987년 전국적으로 계약경영체가 실시된 첫 해에 국민소득에 대한 재정수입의 비율은 1986년의 28%에서 1987년 24.1%, 그리고 1988년에는 19.3%로 감소하였다. 1987년 경상가격으로 GNP가 16.8%나 증가하였지만, 재정수입은 단지 3.8% 증가하는 것에 머물렀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GNP를 보더라도 1987년에 10.6%가 증가하였지만, 재정수입은 실질가격 기준으로 오히려 3.2%나 감소하였다. GNP 성장과 재정수입 증가 사이의 갭은 1988년에 더욱 확대되었는데, 이것이 적자를 누적시킨 원인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계약경영체는 재정상태를 악화시킨 책임의 일부를 떠맡아야 했다.

계약경영체에서 나타난 몇 가지 결함으로 인해, 법인소득세와 이윤납부(profit remission)를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계약경영체를 수정하자는 제안이 대두되었는데, 이것이 소위 ‘利潤-租稅分離制’이다. 이 개선안은 1988년에 제출되어 1989년부터 일부 지역과 국영기업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되었다[Ma(1991), Yuan(1991)]. 국가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것과 모든 자산의 소유자인 국가는 투자자본에 대해 이윤의 일부를 수익금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전자가 자본주의적 의미에서의 법인소득세에 대응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주주에 대한 이윤배당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새로운 제도하에서 법인소득세는 35%로 책정되었다. 그리고 국가에 납부되는 이윤규모는 기업과 정부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었다. 나아가 ‘세전 이윤에 의한 대출금 상환제’가 폐지되고,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공제한 이후의 이윤을 가지고 고정투자용으로 사용된 은행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되었다. 이 제도는 사실상 이윤세제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윤세제도 하에서는 소득세율이 55%였던 반면 이윤-조세분리제 하에서는 그 세율이 3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3. 政府收入의 推勢

앞 절에서 언급한 제도의 변화를 토대로 하여, 이 절에서는 개혁기 정부수입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개혁 이전의 시기와 비교하기로 한다.

〈表 1〉 改革期 以前 政府收入의 變化

(단위 : 억 원)

	1952	1955	1960	1964	1968	1973	1977
직접세	57.27	111.94	365.84	212.93	166.73	457.02	402.35
기업이 윤수취액	57.27	111.94	365.84	212.93	166.73	457.02	402.35
對 총수입 비율(%)	32.9	44.9	63.9	53.3	46.2	56.4	46.0
간접세	92.88	122.79	197.65	177.62	185.23	339.95	442.04
공상세	61.48	87.26	160.61	145.28	147.38	301.38	400.90
對 총수입 비율(%)	35.3	35.0	28.1	36.4	40.8	37.2	45.8
농업세	27.35	30.72	28.04	25.89	30.02	30.52	29.33
對 총수입 비율(%)	15.7	12.3	4.9	6.5	8.3	3.8	3.4
영세	4.05	4.81	9.00	6.45	7.83	8.05	11.81
관세	4.81	4.66	6.00	4.38	6.33	9.00	26.33
對 총수입 비율(%)	2.8	1.9	1.0	1.1	1.8	1.1	3.0
기타 수입	18.98	9.88	2.80	4.61	2.96	3.70	3.84
총수입	173.94	249.27	572.29	399.54	361.25	809.67	874.56
對 NMP 비율(%)	29.5	31.6	46.9	34.3	25.5	34.9	29.1
예산외 수입	13.62	17.02	117.78	65.86	77.44	191.29	311.31
對 총수입 비율(%)	7.8	6.8	20.6	16.5	21.4	23.6	35.6
통합 수입	187.56	266.29	690.07	465.40	438.69	1,000.96	1,185.87
對 NMP 비율(%)	31.8	33.8	56.6	39.9	31.0	43.2	39.4
국민수입(NMP)	589	788	1,220	1,166	1,415	2,318	3,010

註 : 1) 통합수입은 총수입과 예산수입의 합.

資料 : 1991년도 『中國統計年鑑』에 근거하여 계산.

〈表 1〉은 1977년까지 개혁 이전 시기의 정부수입의 변화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1955년, 1960년, 1968년 그리고 1973년은 각각 제 1 차(1953~1957년), 제 2 차(1958~1962년), 제 3 차(1966~1970년), 제 4 차(1971~1975년) 5개년 계획의 중간 연도로서, 각 기간을 대변하는 연도로 책정되었다. 그리고 1952년은 중국혁명 이후 3년간의 조정과정이 종결되고 사회주의 재건설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1964년은 1963년에서 1965년까지 3년 동안의 제 2의 조정과정이 진행되었던 시기를 대표한다.

純物質生產(Net Material Product; 國民收入과 동일) 对比 정부 총수입의 비율은 제 2 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최대치에 도달했다. 中蘇분쟁 이후 이 비율은 급격히 떨어졌으며, 文化革命기에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 그후 약간의 회복세를 거쳐 개혁 직전기에는 약 30%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수입의 원천으로서는 국영기업에서 수취한 이윤과 통합工商稅의 비중이 농업세나 관세 등과 같은 하위 稅金群보다는 월등히 높다. 이러한 현상은 개혁이전 수십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는데, 그 비중은 1950년대에 35%이던 것이 1977년에는 45%로 증가하였다.

개혁실시 이후 제도의 변화에 따라 통계 체계도 바뀌었기 때문에 개혁 이전과 이후의 자료를 일관성 있게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르긴 하지만, 〈表 2〉는 개혁기 이전의 자료인 〈表 1〉과 비교할 수 있도록 原자료를 수정하고 조정한 수치들의 결과표이다. 우선 1984년의 중요한 세제개혁 즉 이윤세제도의 도입에 따라, 국영기업의 이윤납부액은 1985년 자료부터 소득세 항목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1985년부터 이윤납부액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수치들은 단지 금융기관에 의해 송금된 이윤에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表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득세 관련 자료는 1985년부터 제시되어 있다. 둘째, 손실기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부분에도 국제적인 관례에 근거하여 수정을 가했다. 개혁 이전 자료의 이윤납부액은 손실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뺀 액수이다. 개혁 이후를 다루는 〈表 2〉의 자료에서는 그러한 보조금의 규모에 관한 수치를 제시하고, 또 보조금 액수까지를 포함한 이윤납부의 총가치와 보조금 액수를 제한 순가치를 모두 제시하였다.

셋째, 1991년도 『中國統計年鑑』에서 제시된 1985년 이후의 통합工商稅에 관한 수치들에는 鹽稅, 原油消費稅, 전축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조세를 각각 분리하여 〈表 2〉의 조정된工商稅에 반영시켰다. 1984년 후반의 세제개혁에 의해 앞에서 말한 통합工商稅가 부가가치세, 제품세, 사업세로 다시 분할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表 2〉에서 이들 개별 稅目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간단히 말해서 〈表 1〉에 제시된 개혁 이전 시기의 기업이윤수취액에 관한 수치는 〈表 2〉의 개혁 이후의 기업순이윤과 순소득세를 합한 수치와 비교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表 1〉의 총수입 자료는 조정된 조세의 순수입과 다른 소득세의 합계인 전체 순수입과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개혁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국민수입(NMP) 對比 각종 재정 변수의 비율을 이용할 수 있고,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는 조정된 총(조세)수입과 GNP 對比 재정변수의 비율들을 이용해야 한다.

〈表 1〉과 〈表 2〉를 비교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국민수입(NMP) 對比 전체 (순)수입의 비율(또는 GNP 對比 총수입의 비율)이 개혁 이전 30%에서 개혁 이후 20%로 사실상 감소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추세는 중국경제가 개혁기 동안 겪은 분권화(decentralization)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개혁기 동안 재정수입의 구성면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발견된다. 첫째, 전체 순수입 중에서 국영기업들로부터 수취한 기업 순이윤(또는 1985년 이후 법인소득세로 개칭된 부분)의 비중이 개혁 이전 50%에서 1980년대 후반에는 10%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러한 사정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인데, 개혁의 결과 인센티브 제공과 투자의 분권화를 위해

〈表 2〉 改革期 政府 財政收入의 變化

(단위 : 억원)

	1978	1980	1984	1985	1986	1988	1990
조정전 조세수입	519.3	571.7	947.35	2,040.7	2,090.7	2,390.4	2,821.8
조정후 총세입	1,127.27	1,040.9	1,431.5	2,231.3	2,289.8	2,627.5	3,085.2
조정후 순세입	1,091.27	1,006.9	1,346.5	2,051.3	1,965.0	2,181.0	2,506.3
기업 순이윤	571.99	435.24	276.77	43.75	42.04	51.12	78.3
기업 총이윤	607.99	469.24	361.77	—	—	—	—
기업손실	36	34	85	180	324.78	446.46	578.88
총소득세	—	—	—	595.84	595.4	584.6	604.12
순소득세	—	—	—	415.84	270.62	138.14	25.24
총소득세+기업총이윤	607.99	469.24	361.77	639.59	637.44	635.72	682.42
순소득세+기업순이윤	571.99	435.24	276.77	459.59	312.66	189.26	103.54
對 NMP 비율(%)	19.0	11.8	4.9	6.5	4.0	1.6	0.7
對 전체 순수입 비율(%)	51.0	41.8	19.4	21.8	14.7	8.0	3.5
공상세	451.29	501.35	770.50	1,197.60	1,299.10	1,577.10	1,970.8
조정후 工商稅	451.29	501.35	770.50	1,147.80	1,248.50	1,527.90	1,913.2
對 전체 순수입 비율(%)	40.3	48.1	54.1	54.6	58.8	64.8	65.1
原油稅	—	—	18.23	17.01	16.2	14.05	11.4
영세	10.83	9.15	10.31	10.01	10.86	8.75	8.35
건축세	—	—	10.39	22.85	23.57	26.41	37.9
농업세	28.40	27.67	34.84	42.05	44.52	73.69	87.86
에너지·운송세	—	—	122.45	146.79	157.07	185.93	185.08
관세	28.76	33.53	103.07	205.21	151.62	155.02	159.01
對 전체 순수입 비율(%)	2.6	3.2	7.2	9.8	7.1	6.6	5.4
기타 수입	29.8	35.3	77.95	52.24	156.95	176.18	430.74
전체 총수입	1,157.07	1,076.20	1,509.50	2,283.50	2,446.70	2,803.70	3,515.90
對 GNP 비율(%)	32.2	24.1	21.7	26.7	25.2	20.0	19.9
전체 순수입	1,121.07	1,042.2	1,424.5	2,103.5	2,122.0	2,357.2	2,937.1
對 GNP 비율(%)	37.2	28.3	25.2	30.0	27.0	20.1	20.4
예산외 자금	347.11	557.4	1,188.4	1,530.0	1,737.3	2,270.0	—
對 전체 순수입 비율(%)	31.0	53.5	83.4	72.7	81.9	96.3	—
국민수입(NMP)	3,010	3,688	5,652	7,020	7,859	11,738	14,429
GNP	3,588	4,470	6,962	8,558	9,696	14,018	17,686

註: 1) 총세입은 순세입에 기업손실을 합한 액수임.

2) 총소득세액은 순소득세액에 기업손실액을 더한 액수임.

資料: 1991년도 『中國統計年鑑』과 World Bank(1990a, Table 1)에 근거하여 계산. 추정방법에 대해서는 원문을 참조할 것.

기업내의 더 많은 이윤이 유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 순이윤 수취액의 비중이 계속 감소만으로 일관했던 것은 아니며, 중국이 세제의 부분적인 再中央執權化를 시도했던 1985년에는 직전 해의 19%에서 22%로 증가했던 사실에서 보듯이 이 비중이 증가하였던 시기 역시 존재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의 급격한 비중 감소는 국영기업의 누적되는 적자 경영뿐만 아니라 흑자기업의 이윤납부율(소득세율)이 매우 낮았다는 데 기인한다. 1978년

국영기업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571억 9천 9백만원을 국가예산에 납입했지만, 1990년에는 반대로 578억 8천 8백만원의 손실을 냥았다. 이 때문에 국영기업의 순 이윤납입액은 겨우 25억 2천 4백만원에 불과하였다.

둘째, 전체 순수입에서 통합工商稅가 차지하는 비중이 1978년에 40%에서 1990년에는 65%로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 같은 증가는 1985년에 통합工商稅를 부가가치세, 제품세, 사업세로 분할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법인소득세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3. 政府支出의 變化

3.1. 改革以前時期

개혁이 시작되기 이전, 중국의 사회주의경제 운영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정부지출의 변화는 곧바로 경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表 3>은 이러한 변화의 궤적을 보여준다. 첫째, 예상할 수 있듯이 국방비 지출의 비중이 가장 큰데, 中國革命과 中華人民共和國의 건설 이후 전체 지출의 30%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강화를 겨냥한 제1, 2차 5개년 계획기간 중에는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

<表 3> 改革期 以前 政府支出의 變化

(단위: 억원)

	1952	1955	1960	1964	1968	1973	1977
고정자본	46.68	88.53	354.45	123.83	117.85	317.17	300.88
對 총수입 비율(%)	27.1	33.7	55.1	31.4	32.9	39.2	35.7
유동자본	18.56	30.81	67.47	23.35	12.03	53.82	65.68
對 총수입 비율(%)	10.8	11.7	10.5	5.9	3.4	6.7	7.8
농업지원금	2.69	5.82	33.73	20.92	12.89	35.49	50.68
對 총수입 비율(%)	1.6	2.2	5.2	5.3	3.6	4.4	6.0
국방비	57.84	65.0	58.0	72.86	94.09	145.39	149.04
對 총수입 비율(%)	33.6	24.7	9.0	18.5	26.3	18.0	17.7
일반행정	14.54	18.73	27.98	25.17	22.91	35.58	43.32
對 총수입 비율(%)	8.4	7.1	4.3	6.4	6.4	4.4	5.1
교육·과학 및 후생	13.47	19.82	50.46	43.34	40.96	69.88	90.2
對 총수입 비율(%)	7.8	7.5	7.8	11.0	11.4	8.6	10.7
총지출	172.08	262.74	643.64	393.77	357.8	808.8	843.5
對 NMP 비율(%)	29.2	33.3	52.8	33.8	25.3	34.9	28.0
채무상환	3.92	6.56	10.46	5.23	2.0	0.5	n.a
조정전 총지출	176.0	269.3	654.1	399.0	359.8	809.3	843.5
국민수입(NMP)	589	788	1,220	1,166	1,415	2,318	3,010

註: 1) 총지출은 조정전 총지출액에서 채무상환액을 뺀 것임.

資料: 1991년도 『中國統計年鑑』에 근거하여 계산.

ture)이 정부 재원의 절대다수를 흡수하였다. 예컨대 제 1 차 5개년계획의 중반기인 1955년의 경우 고정자본에 대한 정부지출은 총 지출의 34%에 달하였고, 1960년에는 55%로 최고치에 도달했다.

이 시기 자본지출의 막대한 증가는 국방예산의 감축에 의해 가능하였는데, 1960년에는 국방비의 비중이 10% 이하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국방예산은 중국이 소련과 불화를 빚기 시작한 196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문화혁명기인 1968년에는 27%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 교육·과학 및 후생관련 지출의 비중은 개혁 이전의 전 시기를 통틀어 12%를 넘어선 적이 없었다. 또한 일반행정지출 역시 전 기간 동안 4%에서 7%로 안정되어 있었다.

결국 국민수입(NMP)에 대한 정부지출 비중의 전반적인 추세는, 1952년 30%에서 출발하여 1960년에는 최고치인 53%에 도달하였고 1968년에는 최저치인 25% 수준까지 하락했다가 1970년대 중반 이후 개혁 이전의 시기까지는 30%대에 머무는 양상을 보였다.

3.2. 改革期의 政府支出

1978년 이래 계속된 개혁의 물결은 정부지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表 4>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표에서도 중국의 조세 통계자료에 대해 약간의 조정이 가해졌다. 중국의 조세 통계에서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보조금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며, 세출과 세입액은 이러한 보조금 등의 移轉支給(transfer payment)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적자기업에 대해 정부가 법인소득세를 면제시켜 주는 경우, 그 면제액은 수입이나 지출항목 중 어느 쪽에서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적인 관례에 맞추어 총지출액을 잡기 위해서 보조금을 원래의 순세출액에 합산하여 구하였다. 보조금의 규모와 그 경제적 의미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자료의 조정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보조금을 합산하게 되면, 1990년 정부지출의 전체 규모는 3,261억 8천만元에서 4,221억 4천 8백만元으로 늘어난다. 전체 지출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 9.3%에서 1990년에는 22.7%로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보조금이 GNP의 5%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수준이면 그 경제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증가하고 있는 보조금의 대부분은 적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출되었다. 다시 말해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경제에서 비국영기업은 능동적인 경제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반면, 국영기업은 그와 반대로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제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감소함에 따라, 정부의 총지출이 NMP 또는 GNP에서

〈表 4〉 改革期 政府支出의 變化

(단위 : 억 원)

	1978	1980	1984	1985	1986	1988	1990
(A) 중국의 회계방식에 따른 예산							
고정자본	451.92	419.39	488.93	583.8	671.82	633.37	725.6
對 총수입 비율(%)	40.7	35.4	32.2	32.3	29.5	24.1	22.2
유동자본	66.6	36.71	9.96	14.3	9.94	9.59	10.9
對 총수입 비율(%)	6.0	3.1	0.7	0.8	0.4	0.4	0.3
농업지원	76.95	82.12	95.93	101.04	124.3	158.74	221.76
對 총수입 비율(%)	6.9	6.9	6.3	5.6	5.5	6.0	6.8
국방비	167.84	193.84	180.76	191.53	200.75	218.0	290.31
對 총수입 비율(%)	15.1	16.4	11.9	10.6	8.8	8.3	8.9
일반행정	49.09	66.79	137.28	143.58	182.43	239.35	333.47
對 총수입 비율(%)	4.4	5.6	9.0	8.0	8.0	9.1	10.2
교육·과학 및 후생	112.66	146.26	263.17	316.7	379.93	486.1	617.29
對 총수입 비율(%)	10.1	12.4	17.3	17.5	16.7	18.5	18.9
총지출	1,111.0	1,184.1	1,517.4	1,805.2	2,280.6	2,629.85	3,261.8
對 NMP 비율(%)	36.9	32.1	26.8	25.7	29.0	22.4	22.6
채무상환	0	28.58	28.91	39.56	50.16	76.75	190.4
채무상환+총지출	1,111	1,212.7	1,546.4	1,844.8	2,330.8	2,706.6	3,452.2
국민수입(NMP)	3,010	3,688.0	5,652.0	7,020.0	7,859.0	11,738.0	14,429.0
(B) UN방식에 의한 조정							
보조금	114	274	410	507	582.26	763.28	959.68
對 GNP 비율(%)	3.2	6.1	5.9	5.9	6.0	5.4	5.4
對 총지출 비율(%)	9.3	18.8	21.3	21.9	20.3	22.5	22.7
생활필수품 보조	78	240	315	314	257.48	316.82	380.8
농업투입 보조	0	0	10	13	0	0	0
국영기업손실 보조	36	34	85	180	324.78	446.46	578.88
對 GNP 비율(%)	1.0	0.8	1.2	2.1	3.3	3.2	3.3
조정후 총지출	1,225	1,458.1	1,927.4	2,312.2	2,862.9	3,393.13	4,221.48
對 GNP 비율(%)	34.1	32.6	27.7	27.0	29.5	24.2	23.9
GNP	3,588.1	4,470	6,962	8,557.6	9,696.3	14,018.2	17,686.1

註：1) 조정후 총지출(UN방식)은 중국식 총지출액에 보조금을 더한 것임.

資料：1991년도『中國統計年鑑』과 World Bank(1990a, Table 2)에 근거하여 계산.

차지하는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조정된 총지출의 GNP에 대한 비율도 1978년의 34%에서 1990년에는 24%로 줄어들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항목은 보조금, 교육·과학 및 후생에 관련된 지출이고, 축소되고 있는 항목은 고정자본 전설용 지출이나 국방예산과 같은 자본지출임을 알 수 있다.

교육·과학 및 후생 관련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대학 취학률의 증가, 직업훈련의 강화, 9년 의무교육기간의 도입 등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1978년 이후 일상

생필품에 대한 보조가 증가한 것은, 정부가 도시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생계비 상승분을 보상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정자본 전설용 지출이 1978년 40.7%에서 1990년 22.2%로 크게 감소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영기업들이 고정자본 투자를 위해 점점 더 은행 대출이나 기업내 유보자금을 이용하기 시작하여 국가가 이 투자자금을 책임질 필요가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즉 앞 절에서 보았듯이 개혁의 결과, 투자 및 보너스용 자금을 사내 유보에 의한 자기금융(self-finance)을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3.3. 投資資金 配分과 政府豫算

개혁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투자결정과 이윤을 포함한 각종 금융자산에 대해 거의 독점권을 행사하였다. 국영기업의 이윤이 국가예산으로 귀속되는 방식은 재정체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는데, 개별적인 투자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정부기능도 이 재원으로써 가능하였다. 정부는 재정수입이나 투자지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통해서 거시경제적 지표들을 통제 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경제개혁 이후에 기업이 유보이윤의 사용에 있어 더 많은 차율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수입과 투자에 대한 통제권을 점차 포기하게 되었다. 경제주체는 속적으로 계속 증가하였고, 정부는 새로운 경제환경과 부합되는 새로운 투자배분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表 5>는 개혁 이후 투자패턴의 변화상을 보여준다. 전체 경제에서 국유단위에 의해 행해지는 투자의 비중이 약 65% 정도로 개혁 이래 거의 변함이 없지만, 그 투자소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서는 심대한 변화가 있었다. 1978년에는 국유단위에 의한 투자의 60% 이상이 국가예산에 의해 충당되었던 반면, 1990년에는 이 비율이 13%까지 현저히 줄어들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국영기업이 자체에 유보하는 이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국유단위에 의한 투자의 절반 이상이 기업이 자체 조성한 기금(유보이윤과 여타 기금)을 통해 조달되었다. 그리고 투자자금의 조달 창구로서 대외차입이나 국내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였다.

그런데 국가의 투자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데 있어 국가예산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단위의 사업보다는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사업들이 여전히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다[World Bank(1990b, pp. 91~92)]. 예를 들어 1981년에 국가 투자 지출의 약 45%가 중앙정부의 사업이었고, 이것이 1986년에는 49%로 늘어났다. 중앙정부의 전략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의 수를 줄이면서 대신 그 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들 중앙정부 사업은 특별한 우선권을 부여 받았으며, 실행 계획은 매년 단계별로 작성되어 ‘國家計劃委員會’(state planning commission)의 감독과 통제를

〈表 5〉 國有單位에 의한 固定資產 投資
(단위 : 억원)

	1978	1981	1984	1986	1988	1989	1990
총투자액(국유단위)	669	668	1,185	1,979	2,763	2,535	2,919
對 총투자 비율(%)	—	69	65	66	61	61	66
총투자(중국전체)	—	961	1,833	3,020	4,497	4,138	4,449
자금조달별							
국가예산	415.6	257.5	417.9	438.49	405.2	338.71	385.42
총액 대비 비율(%)	62.2	38.6	35.3	22.2	14.7	13.4	13.2
은행대출	—	—	182.4	449.95	668.51	528.66	689.47
총액 대비 비율(%)	—	—	15.4	22.7	24.2	20.9	23.6
해외차입	—	—	25.72	128.29	247.66	257.41	266.0
총액 대비 비율(%)	—	—	2.2	6.5	9.0	10.2	9.1
기업내 기금 및 기타	—	—	514.9	961.76	1,441.3	1,410.7	1,577.7
총액 대비 비율(%)	—	—	43.4	48.6	52.2	55.6	54.1
용도별							
자본형성	500.9	442.9	743.1	1,176.1	1,574.3	1,551.7	1,703.8
총액 대비 비율(%)	74.9	66.4	62.7	59.4	57.0	61.2	58.4
국가예산	389.2	222.6	359.8	417.39	381.67	323.33	363.59
對 자본형성 비율(%)	77.7	50.3	48.4	35.5	24.2	20.8	21.3
개선 및 기타	167.7	224.6	442.0	802.39	1,188.4	983.75	1,029.2
국가예산	26.48	34.88	58.1	21.1	28.26	15.37	18.58
비중(%)	15.8	15.5	13.1	2.6	2.4	1.6	1.8
은행대출	129.9	142.4	277.2	249.83	381.63	235.66	275.12
비중(%)	77.5	63.4	62.7	31.1	32.1	24.0	26.7
자기 기금 및 기타	11.28	47.29	106.6	531.46	778.55	732.72	735.56
비중(%)	6.7	21.1	24.1	66.2	65.5	74.5	71.5
교체투자	—	195.3	309.2	619.21	980.55	788.78	830.19
예산	—	—	—	20.58	27.02	14.15	17.56
은행대출	—	—	—	249.18	378.72	233.21	269.55
기타 고정투자	—	29.3	132.7	183.18	207.9	194.97	199.07
부문별							
공업	—	380.4	653.6	1,159.8	1,726.5	1,597.0	1,809.8
구성비(%)	—	57.0	55.1	58.6	62.5	63.0	62.0
에너지 산업	—	141.2	277.6	443.96	645.02	705.64	846.74
구성비(%)	—	21.2	23.4	22.4	23.3	27.8	29.0
농업	—	34.7	45.6	43.3	63.3	62.2	80.3
구성비(%)	—	5.2	3.8	2.2	2.3	2.5	2.8

資料：『中國統計年鑑』 각 호에 근거하여 계산.

받았다. 더구나 이들 사업의 약 절반 이상에 대해서는 '國家物資供給局' (state material supply bureau)이 필요한 물자 공급을 보장하였다. 그 결과 이들 사업은 통상적인 사업보다는 훨씬 원활하게 완수되었다.

소수의 우선적인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투자의 집중은, 각 사업부문의 중요성을 반영하였다. 그 중요 부문이란 다름아닌 에너지와 운송부문이었는데, 아주 일부분의 애로(bottleneck)에 의해서도 전체 경제발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여, 이들 부문에 대해 투자가 집중되었던 것이다. <表 5>에서 보듯이, 국가에 의한 전체 투자 중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 57%에서 1990년 62%로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나,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의 비중은 1978년의 21%에서 1990년의 29%로 증가하였다.

에너지와 운송부문에 대한 중앙정부의 집착은 투자의 분권화 추세에 대한 대응으로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제 7차 5개년계획 기간(1986~1990년) 동안, 이 두 부문은 국가의 자본건설(capital construction) 투자의 50% 가까이를 흡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운송부문이 15.2%이고 에너지부문은 34.1%였는데, 에너지부문에서는 전력이 2/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양 부문의 평창은 전체 경제성장에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었고, 그 부족분도 계속 증가하였다. 만약 에너지원이 GDP보다 2% 높은 비율로 증가한다면, 에너지원의 고갈 현상은 금세기 말쯤에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World Bank(1990b)].

4. 貨幣金融體制의 改革

4. 1. 改革 以前의 貨幣金融體制

개혁 이전 중국의 화폐금융제도는 전형적인 중앙계획경제의 화폐금융체제였다. 즉 국유화된 은행제도, 금융시장과 금융수단에 대한 완전한 통제, 불균형 이자율과 불균형 환율의 존재, 국제 금융시스템과의 단절 등이 중국의 화폐금융체제를 특징짓고 있었다. 중국의 人民銀行은 모든 금융서비스를 독점하였던 유일한 은행이었다. 1979년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국영은행과 민간은행 그리고 여타의 금융증개기관은 몰수 또는 국유화되거나, 人民銀行에 합병되었다.

中國銀行(Bank of China)은 실질적으로 人民銀行의 외환담당 부서였고, 交通銀行(Bank of Communication)과 그것의 후신인 人民建設銀行(People's Construction Bank)은 1952년과 1958년에 각각 財政部의 산하기관이 되었다. 그리하여 1950년대 초반에는 모든 금융시장이 폐쇄되었고, 남은 것은 人民銀行뿐이었다. 그러나 人民銀行은 진정한 의미의 은행이라기보다는, 財政部와 國家計劃委員會의 자금창구였다고 할 수 있다. 중앙계획경제의 속성상 금융체제가 실물부문의 투입-산출계획에 종속되어 있었고, 금융부문은 실물경제의 흐름이 원활하게끔 최대한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했다.

중국의 金融計劃은 크게 ‘信用計劃’ (credit plan)과 ‘現金計劃’ (cash plan)으로 나뉘었고, 양자는 모든 人民銀行의 관할 하에 있었다. 信用計劃은 자금의 원천과 용도를 명시하였다. 자금의 원천으로는 人民銀行의 자체 기금(영업이윤, 예산 교부금, 통화), 예금, 신규 통화증발 등을 들 수 있다. 이 자금의 대부분은 각 부문별 및 기능별로 분류되어 대출용으로 사용된다. 信用은 生產計劃에 의해 인가된 경제부문과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대해서만 제공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신용 총액은 은행예금의 규모에 의해 제약을 받았으며, 단기가 되면 정확하게 상환해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지침들을 준수하기보다는 위반하는 사례가 벌번하였다.

現金計劃은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사이의 현금의 유출과 유입에 관한 계획을 나타낸다. 人民銀行으로 들어오는 현금의 원천은 소매판매액, 공공시설 이용료, 대출금의 상환, 세금납부, 저축과 정기예금, 그리고 외환수입 등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출되는 통로는 개인과 가계에 대한 임금 및 이전지급, 정부의 농산물 조달, 정부에 의한 비농산물의 구매, 정부지출, 저축과 정기예금의 인출, 외환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현금 유출입간의 격차는 人民銀行에 의한 현금통화 발행의 증감을 의미한다.

현금계획에서는 수표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독특한 지불체계에 의해 규제를 받았다. 이 지불체계는 은행계좌간 이체와 현금유통이라는 두 가지 유통으로 나뉘어졌다. 전자는 도시의 기업과 정부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은행계좌를 이용한 지불은 담당 정부기관의 명시적인 승인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은행에 의해 이뤄졌다. 현금유통은 人民公司나 농촌의 가계 및 개인에게 적용되었던 것으로, 人民公司 내에서의 지불은 물론이고 公司간 지불도 현금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이러한 금융체계란, 곧 총통화가 오직 현금통화만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은행계좌 예금은 행정적 수단에 의해 쉽게 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 조절에 있어서 주로 현금통화의 환류에 의존하였다. 즉 통화당국은 일종의 단순 화폐수량설을 받아들인 셈인데, 이는 $MV=PQ$ 라는 수식으로 표현된다. 여기에서 PQ 의 대리변수로서 총소매판매액을 사용하였으며, 화폐유통속도 V 는 주어진 기간내의 총소매판매액의 가치와 평균 통화량 사이의 비율로 계산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계측된 통화량 M 을 이전期에 실제로 유통된 통화량과 비교하고, 이 양자 사이의 격차를 통해 당해 연도에 필요한 현금통화의 순증감분을 파악하였다 [Chai(1981), Jao(1990)]. 다시 말하면 M 이란 통상의 통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외생변수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PQ 와 V 에 의해 결정되는 내생변수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Peebles(1987)에 따르면 전체 소매판매고에 대

한 현금의 최적 비율이 최저 7.5 그리고 최고 9.0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는, 이 비율에 관한 대략적인 기준이 있었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人民銀行이 신용계획과 현금계획을 모두 책임지고 있지만, 人民銀行은 경제 내의 화폐와 신용에 대해 그다지 실질적인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 이유로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人民銀行은 정부의 개입을 전적으로 배제시킨 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통화정책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즉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중앙은행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人民銀行의 역할은 실물부문의 계획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게끔 그에 걸맞는 금융계획을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하였고, 財政部와 國家計劃委員會의 자금 창구 역할에 머물렀다. 둘째, 국가예산으로써 국영기업 및 도시 集體企業의 고정자본과 시설교체에 필요한 대부분의 투자가 직접 행해졌으므로, 이외의 보완적 투자나 부차적 투자에 대한 자금제공의 역할만이 人民銀行에게 남아 있었다. 셋째, 人民銀行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재정적자분을 메우기 위해서 정부에 대한 자동적인 대출을 해줘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들의 대출요구에서도 마찬 가지였는데, 기업들은 재무상의 책임과 규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軟性豫算制約’ (soft budget constraint) 하에 놓여 있었기에 방만한 자금수요 성향을 보였다 [Kornai(1986)]. 마지막으로, 이 자율이 금융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가격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1953년에서 1978년까지 이 자율의 변동은 거의 없었고, 절대적 이자율 수준마저도 지나치게 낮았다 [Byrd(1983), World Bank(1990c)]. 이 같은 사정은, 투자에 대한 무제한적 예산지원과 더불어, 금융자원의 이용에 심각한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금융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은 흔히 투자자금에 대한 초과수요 또는 중앙계획경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소위 채울 수 없는 ‘投資渴望’ (investment hunger) 현상으로 특징지워진다.

4. 2. 貨幣金融制度의 改革

중국 금융제도의 개혁은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부활과 창출, 금융·은행구조의 합리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 등을 포함하였다. 우선, 최초에 경제제도 개혁의 주요한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농촌부문에서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1979년 2월에 農業銀行 (Agricultural Bank)이 다시 설치되었다. 같은 해 3월에는 人民銀行의 부속기관에 머물러 있던 中國銀行을 국제무역, 외환, 해외송금 등을 전담하는 특수은행으로 복권시켰다. 또한 1979년 10월에는, 중국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中國國際投資信託公社 (China International Trust and Investment Corporation)가 설립되었다. 1981년 12월에는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끌어오기 위해 中國投資銀行 (China

Investment Bank)도 설립되었다.

1983년 9월의 금융개혁에 의하여, 人民銀行은 순수하게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되었으며, 중앙은행으로서의 업무 이외의 사업은 다른 은행으로 이전되었다. 기존의 특수은행에 의해 포괄되지 못하던 업무의 수행을 위해 1984년 1월에는 中國工商銀行(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이 설립되었다. 또한 中國投資銀行(Investment Bank of China)과 같은 몇몇 은행에 대한 관할권도 財政部에서 人民銀行으로 이양되었다. 은행 개혁과 더불어 비은행 금융중개기관들도 새롭게 설립되거나 다시 부활하였다. 국내 보험업이 1980년에 재개되었고, 비록 人民銀行의 관할에 속하긴 했지만 1983년 9월에는 中國人民保險公社(People's Insurance Company)가 人民銀行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였다. 여타의 비은행 금융중개기관도 출현하였다. 그리하여 1987년 말 경에는 6,000개의 투자신탁과 10개의 증권회사 그리고 1,615개의 도시 신용협동조합(credit cooperative)이 존재하였다[Zhou (1988)].

그리고 금융시장도 출현하였는데, 다수의 금융기관이 설립되고 부활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84년 10월 은행간 시장(화폐시장)의 설립이 인가되었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이전까지의 수직적 신용배분방식에 공식적으로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1986년 3월 말 경에 연간 10.44%에서 14.0%에 이르는 가중평균 이자율 기준으로, 11개 도시에서 이뤄진 은행간 거래의 규모는 총 人民幣 3억 5,290만元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Jao(1990)].

1980년대 중반에는 기업과 은행이 자금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주식과 은행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기업주식에 대한 수익은 고정이자와 이익배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기업주식은 채권과 주식의 복합체 또는 서구의 개념으로는 ‘환매 가능한 무의결 우선주’(non-voting, redeemable, participating preferred stock)라 할 수 있다[Lee and Mark (1991), Jao (1990)]. 은행채권은 1986년 工商銀行과 農業銀行에서 발행되었는데, 이 채권의 액면이자율은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보다 1.8%포인트 만큼 더 높았다[Grub and Sudweeks(1988)].

4. 3. 通貨政策機構의 整備

앞에서 언급한 제도적 발전 이외에, 시장지향적 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통화정책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시도도 있었다. 그 목적은 화폐와 신용 관련 변수를 조정하는 데 있어 이전의 행정지도적 수단을 지양하고 이를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수단들을 사용하는 데 있었다.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공개시장조작, 재할인율정책, 지불준비금제 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광범위한 채권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첫번째의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통화정책은 불가능했다[Jao(1990)]. 따라서 人民銀行은 후자의 두 가지 수단에 거의 의존하였다.

지불준비금제도는 1984년에 정착되었으며, 지불준비율은 예금의 종류에 따라 20%와 40% 사이에서 변동하였다. 1985년에는 특수은행에 의해 취급되는 예금에 대해 10%의 지불준비율이 부과되었다. 그리고 1987년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하여 12%로 상향조정되었다. 재할인율은 1986년 이래 人民銀行이 다른 특수은행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시할 때 적용되었다. 대출은 대개 연간대출, 일시대출, 일일대출 그리고 재할인창구대출(discount window advance)의 형태를 취하였다. 이를 대출의 대부분은 농산물 수매와 수출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같이 계절적인 혹은 일시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되었고, 보증이나 담보도 없었다. 人民銀行은 궁극적으로 이를 대출을 재할인창구방식으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Jao(1990)].

이자율은 행정적 통제에 의해 고정되어 있었지만 매우 빈번하게 상향조정되어 왔다. <表6>은 1986년에서 1990년까지의 중앙은행 이자율을 보여준다. 이자율은 대출하는 주체와 자금을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주체가 누구나에 따라 달랐다. 일반적으로 국영기업과 도시集

〈表 6〉 中國 人民銀行의 利子率

(단위 : %)

날짜	예금		농촌의 신용 협동조합으로부터의 예금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금			연간이자율	계절이자율	통상이자율	재할인율	
	의무지불준비금	축과지불준비금						
1985년								
1/01	4.32	4.32	—	4.68	5.04	5.04	—	
8/01	4.32	4.32	—	4.68	5.04	5.04	—	
1986년								
2/08	4.32	4.32	—	4.68	5.04	5.04	—	
8/01	4.32	5.76	—	4.68	6.84	6.48	-3.0	
9/21	4.32	5.76	—	6.48	6.84	6.48	-7.5	
1987년								
9/21	4.32	5.76	7.92	7.2	7.2	7.2	-7.5	
12/21	5.04	5.76	7.92	7.2	6.84	6.84	-7.5	
1988년								
1/01	5.04	5.76	7.92	7.2	6.84	6.84	-7.5	
9/01	5.04	6.48	9	8.28	7.56	7.56	-7.5	
1989년								
2/01	7.2	8.64	—	10.44	9.72	9.72	—	
1990년								
4/15	7.92	7.92	—	9	9	9	—	
8/15	6.84	6.84	—	7.92	7.92	7.92	—	

[資料：中國 人民銀行；World Bank(1990c)에서 재인용.]

體企業은 사적 기업보다 낮은 이자율의 혜택을 보았다. 그리고 농업, 에너지, 운송, 국방과 같이 우선순위를 갖는 특정한 산업부문도 이자율 특혜를 받았다. 그런데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문제점의 하나는 예금과 대출 이자율의 역전 곧 逆마진 현상으로, 이는 대출이자율이 예금이자율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 문제는 1985년에 취해졌던 조치에 의해 대부분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Li(1987, pp. 170~172)].

특수은행은 물론이고 투자신탁 및 농촌의 신용협동조합을 비롯한 여타의 금융중개기관의 경우에도, 대출이자율과 예금이자율은 인민은행에 의해 고시된 이자율의 20%의 범위내에서 변동가능하였다. 이자율의 결정에 점점 더 많은 자율권이 부여됨과 동시에 은행의 대출결정에서도 더 많은 자율권이 보장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기업에게 저절로 신용이 공급되던 관행은 적어지고, 대출을 위해서는 은행에 의한 신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기업의 각종 프로젝트가 실행 가능한지와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도 은행이 직접 심사하게 되었다.

5. 現段階 財政金融體系의 問題點과 改革의 展望

5. 1. 財政改革의 展望

중국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투자와 소비에서의 예측불가능한 변화를 비롯하여 각종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는 제반 요인들을 계획당국이 통제하였다. 그래서 현재 사회주의 중국의 세입·세출체계는 시장원리에 기초한 대부분의 경제에서 볼 수 있는 약점들, 즉 재정적자가 인플레이션, 대외부채와 무역불균형 등 거시경제적 불안정의 원인이 되는 그런 상황은 적었었다. 중국의 재정체계의 보다 심각한 약점은 미시경제적 차원의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가 실질적인 분권화 과정을 겪음에 따라 미시경제적 약점이 이제는 거시경제적 문제점을 야기하기 쉬워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 이후의 중국경제에서는 재정정책 측면에서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재정정책이 총수요관리에 있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할 수도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정정책의 일차적인 수단으로서 투자지출의 직접적 조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더욱 효과적인 조세정책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재정부문의 취약성은, 기업과 조세당국이 이윤세의 양을 놓고 자의적인 협상을 해야 하는 계약경영체임제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수입을 상호배분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을 벌여야 하는 재정수입배분제(revenue sharing system)와 관련되어 있다.

현재의 계약경영체에서는 기업의 이윤에 대한 세금의 탄력성이 1보다 작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세금/GDP의 평균 비율뿐만 아니라 정부에 귀속되는 이윤의 비중도 줄어들었다. 평균 세율을 감소시키는 이 같은 이윤계약제도로 인해, 현재 중국의 조세체계는 경기순환에 대한 자동조절기능을 수행하는 데 매우 취약하다. 다시 말해 현재 중국경제에서는 이윤과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에 따라 점점 많은 금융자산이 기업에 의해 보유되어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체제는 자동적인 ‘財政安定裝置’(fiscal stabilizer)를 보유하여 경기가 과열되는 경우 총수요가 자동적으로 진축되는 여타의 국가와는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계약정책임제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이윤배분제도도 중국의 재정부문에順경기순환적 편향(pro-cyclical bias)를 초래한다. 고정된 이윤액납부제 하에서는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입이 경제적 성과나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는 반면[World Bank(1990a)], 경기순환은 단지 지방정부의 세입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총수요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호황시 재정수입이 증가하면 지출도 증가하는 경기순환 확대적(pro-cyclical) 경향이 존재한다.

재정 분권화의 정도도 중앙정부가 경기안정을 목적으로 조세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에서는 조세관련 업무의 집행책임이 지방정부에 위임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통제없이 지방정부가 사실상 조세정책을 수립하고 세율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율권은 관할구역 내에서 조세를 감면 혹은 경감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포함하였다[World Bank(1990a)]. 따라서 중앙단위에서 결정된 조세정책과 지방단위에서 이뤄지는 조세정책의 실질적인 인센티브 효과 사이를 잊고 있던 고리가 사실상 차단되었다.

중국의 분권화된 재정체계에서는, 중앙정부가 차지할 여러 종류의 세금을 지방정부가 애써 정확히 징수하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똑같은 자의적 조세감면 조치를 통해 지방기업의 수중에 되도록 많은 금융자산을 유보시켜 두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상당한 재원이 지방정부의 관할권 내에 남아 있게 되고, 지방정부 당국은 필요시 중앙정부와 나눠 가질 필요가 없는 자발적인 기부금 형태로 필요 재원을 기업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은 경감되지 않으면서, 단지 중앙정부의 재정수입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조세제도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제한다면, 장래의 조세개혁은; 분권화로 인한 편익과 중앙단위의 관리 및 조세정책이 느슨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중국정부에 의해서도 끓임

없이 논의되고 주장되어 왔듯이 기업과 정부간의 이윤송금계약은 세후 이윤을 분배하는 것에 한정해야 한다. 이는 기업에 대해 일정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에게 이윤을 배당한다는 점에서 정당하다. 그리고 중앙단위의 재원관리와 조세정책을 위해,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조세경감과 같은 재량권을 축소하고 그들의 조세관리를 보다 엄밀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順경기순환적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기업의 이윤납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수입의 분배가 고정된 액수보다는 비율에 기초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지출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 진행중인 개혁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는 세부적인 요인들의 불확실성과 개혁의 속도조절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매우 불투명하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담당해야 할 많은 사회경제적 역할들이 기업에 의해 여전히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정부지출의 미래상은 투자자금 조달을 비롯한 각종 업무와 책임들을 얼마나 많이 기업 쪽에 이양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기업으로부터 사회적 영역에서의 역할들을 이양받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보장, 주택 및 연금에 대한 개혁은 처음부터 비용과 예산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

5.2. 貨幣金融制度의 改革展望

1979~1990년의 금융개혁은 중국에서 금융시장이 출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운영자금 조달에 새로운 통로를 제공하였고 특수은행에 의존하던 금융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이 개혁은 은행 위주의 금융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측면, 금융기관간 가격경쟁을 강화한다는 측면, 그리고 신용을 할당하는 데 있어 예산공급에만 한정되지 않는 금융부문의 독자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 [World Bank(1990c)]. 중국에서는 자원배분의 측면에서 은행과 정부예산의 역할이 아직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문에서의 추가적인 개혁은, 은행이 정부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는 단순한 창구에 머물기보다, 진정한 금융중개기관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재정부문과 금융부문간을 분명하게 분리하는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은행의 자율권 보장과 은행의 자기책임을 강조하는 주장도 있지만, 금융자유화 이후 국민경제 전체 차원의 우선순위와는 다르게 신용이 배분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중요한 국가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중앙당국이 개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중앙당국은 계획에 의해 결정된 사업에 대한 우선적 대출을 여러 금융중개기관에게 직접 지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제를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같은 우선 대출은 은행의 수익성을 해치는 낮은 이자율수준에서 종종 이뤄졌다. 각 은행의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통한 신용배분이 잠재적으로 부적절할 가능성은 왜곡된 가격 체계와 기업보조 체계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은행제도, 기업체제, 그리고 가격의 개혁은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가격신호에 근거하여 대출을 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은행이 역동성있고 효율적이며 전진한 금융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출심사에 관한 은행의 폭넓은 자율권과 예금·대출 이자율 결정에서의 더 많은 신축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쳐 강조하고 싶다.

이자율은 현재 여전히 비신축적인데, 앞으로는 이자율이 인플레이션 전망과 인플레이션의 등락에 따라 변동해야 한다는 예상에 근거하여 자율적이고 규칙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시장메카니즘에 더 많은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 기업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指數와 연계된 정기예금을 할 수 있고 指數와 연계된 국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대출이자율도 자금에 대한 은행의 비용을 초과하는 적절한 마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 데도, 현재 너무 낮은 수준의 이자율로 인해 여유자금을 적절히 비축하고 자본금을 늘릴 정도의 충분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World Bank(1990c)].

개인이 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공채시장의 육성과 관련해서 보면, 국채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현재의 제도가 지속되는 한,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 또한 財政部가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다. 단기간에 막대한 양의 정부채원이 소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財政部는 공채의 수익률을 높이고 기업의 공채거래를 허용하여 공채에 대한 투자매력을 높이는 한편 공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금융중개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고, 농촌지역에서 사채(私債) 시장이 출현할 정도로 금융수요의 급증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다[World Bank(1990c)]. 사실상 이들 중개기관을 축소시키거나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정적인 규제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이들 중개기능을 공식부문에 적절히 통합시키고, 적절한 합법기구 혹은 감독기구를 통해 이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助教授

151-74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전화 : (02)880-6367

팩시 : (02)888-4454

參 考 文 獻

- Bachman, David(1987)：“Implementing Chinese Tax Policy,” in D. Lampton (ed.), *Policy Implementation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Byrd, William(1983)：*China's Financial System*, Boulder, Westview Press.
- Chai, C.H.(1981)：“Money and Banking Reforms in China,” *Hong Kong Economic Papers*, 14, 37~52.
- Gong Qifang and Chen Deyan(1984)：*The Implementation Regulations and the Calculation Methods of the Second Step 'Change-profit-to-tax System'*, Jingji Kexue Chubanshi, The Economic Sciences Publishing House.
- Grub, G., and B.L. Sudweeks(1988)：“Securities Market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Newsletter*, 74, 11~16, May-June.
- Jao, Y.C.(1990)：“Financial Reform in China 1978~89: Retrospect and Reappraisal,” *Journal of Econom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3, 4, 279~309.
- Kornai, J.(1986)：“Soft Budget Constraint,” *Kyklos*, 39, 386~400.
- Lee, Keun(1990)：“The Chinese Model of the Socialist Enterprise: An Assessment of its Organiza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14, 3, 384~400.
- Lee, Keun and Shelley Mark(1991)：“Privatization in China's Industry,” *China Economic Review*, 2, 2, 157~174.
- Li, Maosheng(1987)：*A Study of China's Financial Structure* (in Chinese), Shanxi, People's Press.
- Ma Qingquan(1991)：“A Comment on the Two Starting Points and Suggested Plans of the STPS,” *Caimao Jingji(Finance and Trade Economics)* (Beijing), 1.
- Nee, Owen D., Franklin Chu, and Michael Mosher (eds.) (1982)：*Commercial, Business, and Trade Law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obbs Ferry; Oceana Publication.
- Peebles, Gabin(1987)：“Chinese Monetary Management 1952~1982,” in Chai and Leung (eds.), *China's Economic Reforms*, Hong Kong, Centre of Asian Studies, Univ. of Hong Kong.
- SSB(State Statistic Bureau of China)(1991)：*The Statistical Yearbook of China, 1991*, Zhongguo Tongji Chubanshi(The Chinese Statistics Publishing House), August.
- World Bank(1990a)：*China: Revenue Mobilization and Tax Policy*,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_____(1990b)：*China: Macroeconomic Stability and Industrial Growth under Decentralized Socialism*,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_____(1990c)：*China: Financial Sector Policies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Xun Dazhi(1990)：“The Contract Responsibility System: Its Predicament and Future-The Enterprise Operational Mechanism Reforms During the Adjustment Period,” *Jingji Yanjiu*

(*Economic Research*), 3, 51~58.

Yang Peixin(1990) : "On Persisting and Perfecting the Contract Responsibility System," *Jingji Yanjiu* (*Economic Research*) (Beijing), 3.

Yuan Yuan(1991) :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STPS," *Jingji Lilun Yu Jingji Guanli* (*Economic Theories and Economic Management*) (Beijing), 3, 29~33.

Zhou, Zhengqing(1988) : "New Progress in Financial Reform 1987 (in Chinese)," *Zhongguo Jingji Nianjian*, section III, 15~17.